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. 5. 17 선고 2023가단38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중중

변 론 종 결 2023. 5. 3.

판 결 선 고 2023. 5. 17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40,000,000원 및 그 중 120,000,000원에 계약해지 2021. 12. 20.부터 연 5%,
소장받은 날부터 연 12% 완제일까지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

원고는 2021. 5. 3.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C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

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2021. 5. 7.부터 2021. 6. 28.까지 사이에 합계 240,000,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.

그 후 피고가 원고 외에 제3자인 주식회사 D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데 대해서 원고가 이익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을 반환받으라고 통지하였으나 실제로는 반환하지 아니하였다.

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40,000,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.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2023. 2. 2. 제기된 사실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2. 12. 2. 이 법원 2022가단22342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(이하 '선행소송'이라 한다)를 제기한 사실,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약간 다르나 청구금액은 같고, 청구원인도 동일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정웅